

 보건복지부		보 도 자 료 5월 31일(금) 조간 (5.30.12시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9. 5. 30 / (총 17매)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	팀 장	백 경 순	전 화
	담당자	이 회 정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 장	이 현 옥	
	담당자	서 유 리	
		044-202-3552	
		044-202-3553	
		044-202-7470	
		044-202-7480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한 43개 사업장 공개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0.1%, 작년에 비해 3.4%p 증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31일(금) 각 누리집*에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37개소(불응2)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6개소(불응3)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명단 공표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청년/여성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

- 정부합동으로 실시한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 이행률은 90.1%로 2017년 86.7%에서 3.4%p 증가하였다.

- 이는 20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행률이 9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행사업장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의무이행률(%) : ('12)74.3→('13)81.7→('14)75.0→('15)52.9→('16)81.5→('17)86.7→('18)90.1

** 의무이행사업장개소 : ('12)683→('13)877→('14)903→('15)605→('16)940→('17)1,086→('18)1,252

-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높아진 것은 그간 정부가 시행해 온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정부정책이 정착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아울러 '18년 조사부터 도입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라 기업의 인식과 응답이 높아지고, 조사불응 사업장이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389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252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137개소였다.

- 지난 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의무 사업장은 136개소 늘어났으며, 의무이행사업장은 166개소가 늘어났다.

	의무사업장* (A=B+C)	이 행(B)			미이행(C)
		계	설치	위탁	
'18년	1,389	1,252(90.1%)	957(68.8%)	295(21.2%)	137(9.9%)
'17년	1,253	1,086(86.7%)	839(66.9%)	247(19.7%)	167(13.3%)

*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제외(명단 공표 대상에는 포함)

- 미이행 사업장(137개소)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공표 제외로 규정한 경우와 특별고용지원 업종, 회생절차 중인 사업장 등 명단공표 심의위원회가 공표 제외 대상으로 심의·의결한 사업장은 공표 명단에서 제외*(100개소) 하였다.

* ①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43개소),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25개소),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2개소)

- 또한,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설치장소 확보 곤란, 사업장 특성, 비용부담 등을 들었다.

□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컨설팅)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의무대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시설전환비(3억~6억 원), 인건비(1명당 월 60만 원) 등을 지원<붙임5>

□ 보건복지부 백경순 공공보육팀장은 “명단 공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감시·관리 등 후속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이현옥 여성고용정책과장은 “미이행 사업장의 설치지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근로자가 함께 이용하는 상생형,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등 다양한 유형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붙임 >

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제도 개요
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3.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
4.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상세 결과
5.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내용
6.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규정
7. 질의응답

붙임 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 개요

주요사항	내 용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동법 시행령 제20조의4, 제20조의5 (‘12.6.29 시행)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관계부처 합동(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시도) 조사 실시(‘19.1 ~ 3월초) * (복지부) 국가기관 및 그 외 사업장, (고용부) 일반 기업, (교육부) 각급 학교 및 대학병원, (시·도) 지방행정기관 * 조사수행 : 육아정책연구소,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설치의무 사업장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표사항	사업장 명칭·주소·상시(여성)근로자 수·보육 대상 영유아 수 또는 미이행 사유 등
공표시기 및 방법	매년 5월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 및 2개 이상 일간지 게재
이행기준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② 위탁 보육 * 보육수당 지급은 2015년도부터 폐지
공표대상(기준)	설치의무 이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명결과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과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공표 제외사유	①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설치 중인 경우 ③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위촉) : 총 8명 - 근로자 대표(1인), 사업주 대표(1인), 법률전문가(1인), 공익대표(2인), 보육전문가(2인), 복지부(1인)
공표절차	①심의 ⇒ ② 공표대상 사업장에 사실 통보 ⇒ ③ 20일간 소명자료 제출 등 의견진술 기회부여 ⇒ ④ 공표(제외)대상 사업장 재심의 ⇒ ⑤ 공표대상 사업장 최종확정 및 공표(5.31)

붙임 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37개소]

연번	업종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 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	사업장에서 제시한 미이행 소명 사유
1	학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677	68	69	설치 중
2	학교	세명대학교	충북 제천시 세명로 65	747	268	80	수요부족 등
3	대학 병원	이화의대부속 목동병원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	2,005	1,593	154	설치 중
4	기업	의료법인 한미음 의료재단 하남병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62 (가경동)	556	406	79	수요부족 등
5	기업	(주)경동	강원 삼척시 도계읍 도상로 512	667	27	105	수요부족 등
6	기업	주식회사 노랑풍선 본사	서울 중구 수표로 31 노랑풍선 빌딩	578	401	57	수요부족 등
7	기업	(주)다스	경북 경주시 외동읍 외동농공단지길 14	963	105	336	수요부족 등
8	기업	(주)디아이씨	울산 울주군 두동면 봉계농공길 8	767	27	182	미소명
9	기업	매일경제신문사	서울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662	193	139	수요부족 등
10	기업	(주)세진	경북 경주시 양남면 동남로 167-42	523	82	233	수요부족 등
11	기업	(주)아모텍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380	607	271	47	수요부족 등
12	기업	(주)코스트코리아 광명점	경기 광명시 일직로40	651	300	136	수요부족 등
13	기업	(주)코스트코리아 양재점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59	531	213	95	수요부족 등
14	기업	(주)티웨이항공	서울 강서구 하늘길 210 김포국제공항 화물청사 3층	1,394	558	175	수요부족 등

연번	업종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 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	사업장에서 제시한 미이행 소명 사유
15	기업	(주) 포스코휴먼스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13번길 15-1	624	248	80	미소명
16	기업	(주)화승알엔에이	경남 양산시 충렬로 61	891	143	270	미소명
17	기업	라이나 생명보험(주)	서울 종로구 삼봉로 48 시그나타워	728	401	197	미소명
18	기업	미래에셋생명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미래에셋대우빌딩	738	287	272	수요부족 등
19	기업	삼성회계법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27층	3,171	1,039	542	수요부족 등
20	기업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신천동 11-6)	608	145	89	수요부족 등
21	기업	스위스포트 코리아(주)	인천 중구 공항로 271(운서동,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804	424	45	설치 중
22	기업	신성통상(주)	서울 강동구 풍성로63, 84	532	271	93	수요부족 등
23	기업	쏘테크 주식회사	경남 거제시 장평3로 75 설계지원센터 2관	683	161	214	설치 중
24	기업	안진회계법인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One IFC	1,940	610	401	수요부족 등
25	기업	에드워드코리아 (주) 천안3공장	충남 천안시 서북구3공단 6로 80	595	62	258	미소명
26	기업	에이앤디신용정보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44 태영빌딩	463	318	23	수요부족 등
27	기업	에코플러스텍 (주)	경북 경주시 69번길 30	602	28	57	수요부족 등
28	기업	영풍전자(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141번길 50	604	124	71	1년 미만

연번	업종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 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	사업장에서 제시한 미이행 소명 사유
29	기업	오렌지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 7길 37 (순화동, 오렌지센터)	774	479	310	설치 중
30	기업	오토리브 유한회사	경기 화성시 동부대로 730-66	507	163	101	미소명
31	기업	(의)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경기 평택시 평택로 284 (세교동, 평택성모병원)	509	364	38	설치 중
32	기업	(주) 페코텍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96길 12 페코빌딩	409	333	25	수요부족 등
33	기업	카페24(주)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1,052	510	271	설치 중
34	기업	쿠팡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70 18층	3,908	1,857	600	미소명
35	기업	한미반도체	인천 서구 가좌동 532-2	602	45	181	미소명
36	기업	한영회계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태영빌딩 3-8F	2,588	887	316	수요부족 등
37	기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서울 중구 칠패로 37	537	335	146	미소명

붙임 3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 [6개소]

연번	업종	사업장 명칭	주 소
1	기업	(주)다모아파트너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20 11층 1101호 (여의도동)
2	기업	(주)지성에이치알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6
3	기업	(주)휴먼테크원	서울 구로구 공원로8길 43738(구로동)
4	기업	고려종합개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0
5	기업	씨앤에스크리에이티브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역삼동, 한라클래식오피스텔) 1104호
6	기업	주식회사오아시스	경기 광주시 발말길 17 (목현동)

붙임 4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실태조사 결과

1. 사업장 유형별 설치의무 이행현황('18.12.31. 기준)

(단위 : 개소, %)

구 분		의무사업장 (A=B+C)	이 행(B)			미이행(C)
			계	설 치	위 탁	
합 계		1,389	1,252	957	295	137
		(100.0)	(90.1)	(68.9)	(21.2)	(9.9)
국가기관		167	155	146	9	12
		(100.0)	(92.8)	(87.4)	(5.4)	(7.2)
지 자 체		183	173	129	44	10
		(100.0)	(94.5)	(70.5)	(24.0)	(5.5)
학 교	국공 립	25	24	16	8	1
		(100.0)	(96.0)	(64.0)	(32.0)	(4.0)
	사립	78	70	30	40	8
		(100.0)	(89.7)	(38.5)	(51.3)	(10.3)
대 학 병 원	국공 립	13	13	10	3	0
		(100.0)	(100.0)	(76.9)	(23.1)	(0.0)
	사립	55	52	34	18	3
		(100.0)	(94.5)	(61.8)	(32.7)	(5.5)
기 업		868	765	592	173	103
		(100.0)	(88.1)	(68.2)	(19.9)	(11.9)

2. 미이행 사업장 현황('18.12.31. 기준)

가. 사업장 유형별 현황

(단위 : 개소, %)

계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대학병원	기업
137	12	10	9	3	103
(100.0)	(8.8)	(7.3)	(6.6)	(2.2)	(75.2)

나. 미이행 사유별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계	장소 확보 어려움	보육 대상 부족	설치 비용 부담	운영 비용 부담	정보 부족	강제 규정 미약	사업장 특성상 어려움
전 체	252	74	53	43	28	8	1	45
	(100.0)	(29.4)	(21.0)	(17.1)	(11.1)	(3.2)	(0.4)	(17.9)
국가기관	22	6	3	5	3	1	0	4
	(100.0)	(27.3)	(13.6)	(22.7)	(13.6)	(4.5)	(0.0)	(18.2)
지자체	16	7	3	3	1	0	0	2
	(100.0)	(43.8)	(18.8)	(18.8)	(6.3)	(0.0)	(0.0)	(12.5)
학 교	12	3	5	1	2	0	0	1
	(100.0)	(25.0)	(41.7)	(8.3)	(16.7)	(0.0)	(0.0)	(8.3)
대 학 병 원	2	1	0	0	0	0	0	1
	(100.0)	(50.0)	(0.0)	(0.0)	(0.0)	(0.0)	(0.0)	(50.0)
기 업	200	57	42	34	22	7	1	37
	(100.0)	(28.5)	(21.0)	(17.0)	(11.0)	(3.5)	(0.5)	(18.5)

※ 미이행 전체 사업장 중 응답한 사업장의 미이행 사유임(중복응답)

다. 명단공표 제외 사업장 및 제외 사유

(단위 : 개소, %)

구 분	계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중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	100 (100.0)	43 (43.0)	25 (25.0)	32 (32.0)
국가기관	12 (100.0)	4 (33.3)	6 (50.0)	2 (16.7)
지자체	10 (100.0)	6 (60.0)	1 (10.0)	3 (30.0)
학교	7 (100.0)	0 (0.0)	2 (28.6)	5 (71.4)
대학병원	2 (100.0)	0 (0.0)	1 (50.0)	1 (50.0)
기업	69 (100.0)	33 (47.8)	15 (21.7)	21 (30.4)

라. 명단공표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

계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대학병원	기업
43	-	-	2	1	40
(100.0)	(0.0)	(0.0)	(4.7)	(2.3)	(93.0)

※ 미이행 37개소, 불응 6개소

3. 전년도 설치의무 이행현황('17.12.31. 기준)

(단위 : 개소, %)

구 분	의무사업장 (A=B+C)	이 행(B)			미이행(C)
		계	설치	위탁	
합 계	1,253 (100.0)	1,086 (86.7)	839 (67.0)	247 (19.7)	167 (13.3)
국가기관	131 (100.0)	122 (93.1)	115 (87.8)	7 (5.3)	9 (8.4)
지 자 체	168 (100.0)	155 (92.3)	123 (73.2)	32 (19.1)	13 (7.7)
학 교	107 (100.0)	91 (85.1)	44 (41.1)	47 (43.9)	16 (14.9)
대 학 병 원	69 (100.0)	60 (87.0)	44 (63.8)	16 (23.2)	9 (13.0)
기 업	778 (100.0)	658 (84.6)	513 (65.9)	145 (18.6)	120 (15.4)

붙임 5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내용

구분	지원 종류	내역			지원한도		지원요건 등
설 치 비	무상 지원 (‘00)	대규모 기업	단독	시설전 환비	3억원	60%	-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공동		6억원	(80%)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		4억원	90% (40%)	- 시설전환비·시설건립비: 90% (시설매입비: 40%)
			우선지원대상 기업 2~4개소 인 사업주 단체	시설전 환비	10억원		
			우선지원대상 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시설건 립비 (시설매 입비)	20억원		
			(공통)	시설개 보수비	1억원	90%	
유 지 비	교재 교구비	대규모 기업	교재교 구비		5천만원	60% (80%)	-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 신규: 5천만원~7천만원 지원 - 교체비: 3년 교체시마다 3천만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7천만원	90%	
	용자 (‘00)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7억원 (공동 9억원)		- 상환: 3년 거치 5년 균등분 할 - 이율: 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 토지매입비는 용자대상 제 외
인 건 비	인건비 지원 (‘95)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월 60만원 (중소기업 월 120만원)		<최대 지원금액> * 기준: 월평균근무시간 - 원장은 매월말일 기준 보육 아동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11.8.1부터 사제보육교사인건비 지 원
	중소기 업 운영비 지원 (‘11)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월 200~ 520만원		<최대 지원금액> * 기준: 매월말일 보육아동 현 원 - 39명 이하: 월 200만원 - 40명~59명 이하: 월 280만원 - 60명~79명 이하: 월 360만원 - 80명~99명 이하: 월 440만원 - 100명 이상: 월 520만원

*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지원수준 상향(‘17.4월~)

붙임 6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규정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여부 판단 기준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 사업주가 단독·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

② 위탁보육 실시

- 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하여 보육하고,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

⇒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보육료(부모가 바우처로 어린이집에 지불하는 비용)의 총합을 의미하며, 그 비용의 50% 이상을 회사가 어린이집에 추가로 지원

예) 근로자 자녀 중 1세 영유아 5명, 2세 영유아 10명, 3~5세 영유아 15명을 어린이집에 위탁보육하는 경우 회사의 최소 지원비용

$$\rightarrow (40.0\text{만원} \times 5\text{명} + 33.1\text{만원} \times 10\text{명} + 22\text{만원} \times 15\text{명}) \times 0.5 = 430.5\text{만원}$$

□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

① 이행명령 부과

-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자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재차 이행명령 가능

② 이행강제금 부과

- 2차 이행명령까지 불이행 시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붙임 7 질의 응답

1. 실태조사 대상사업장(설치의무사업장) 선정 기준은?

- 설치의무사업장 판단 기준인 상시근로자수 확인이 가능한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전국사업체조사**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

* (설치의무사업장)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2.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인데도 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한 사업장은?

- (의무사업장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0조①
- 의무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는 **사업장에서 제외**

* (단위사업장) 전체 기업규모가 아니며, 사업이 행해지는 인적·물적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개념(보육사업안내)

- i) 인력 파견업, 청소업체 등 **사업장내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ii) 공간을 달리하여 **인적·물적 자원이 분리되어 있음이 확인된 경우**
- iii) 단기 근로자가 많아 **연중 상시근로자수 변동이 심한 사업장**의 경우

3. 실태조사 항목은?

-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등 기본사항, 보육수요, 직장어린이집 설치 여부 및 지원내용, 미이행 사유 및 향후 이행계획 등

4. 실태조사 방법 및 조사기관

- (조사 시기) '19. 1월 ~ 3월 첫째주
- (조사 방법)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장별 실태조사 담당자가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
- (조사기관) 관계부처 합동(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시·도) 조사 실시
- (고용부) 일반 기업, (교육부) 각급학교 및 대학병원, (시·도) 지방행정기관, (복지부) 국가기관 및 그 외 사업장 * 조사위탁 : 육아정책연구소

5. 미이행사업장 수와 명단공표 미이행 사업장의 수가 다른 이유?

- (명단공표 대상) 설치의무 미이행 및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 단, 미이행 사업장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공표 제외 사유와 그 외 명단공표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는 공표 제외

* 시행령 제20조의5(명단공표제외사유) ①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영유아보육법상 명단공표 제외 사유 외 명단공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명단공표 제외 사유는?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및 경영악화로 **희생절차** 중인 경우
- 어린이집 '설치 중'으로 **지연사유가 검증된 경우**
-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명단 공표 제외사유로 **확인된 경우**

7. 명단공표 후 후속조치(이행강제수단)

-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명령)** 사업주가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자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재차 이행명령 가능
 - **(이행강제금)** 2차 이행명령까지 불이행 시 1년에 2회, 매회 1억 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최근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19.11월 시행)**
 -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제44조의3(이행강제금)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 부과할 수 있다.